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14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 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40	성일종의원	2024. 8. 8.	2024. 11. 15.
	2203428	황 희의원	2024. 8. 30.	2024. 11. 15.
	2205418	유용원의원	2024. 11. 11.	2025. 2. 11.
	2206034	안규백의원	2024. 11. 29.	2025. 2. 11.
	2207637	윤준병의원	2025. 1. 20.	2025. 9. 2.
	2207733	허 영의원	2025. 1. 22.	2025. 9. 2.
	2207788	박균택의원	2025. 1. 23.	2025. 9. 2.
	2207844	추미애의원	2025. 1. 24.	2025. 9. 2.
	2208027	허 영의원	2025. 2. 10.	2025. 9. 2.
	2208281	허 영의원	2025. 2. 19.	2025. 9. 2.
	2209085	안규백의원	2025. 3. 19.	2025. 9. 2.
	2209665	성일종의원	2025. 4. 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4. 23.)
	2210340	황 희의원	2025. 5. 2.	2025. 9. 2.
	2210850	안규백의원	2025. 6. 16.	2025. 9. 2.

나. 이상 1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2025. 11. 25.)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2025. 11. 27.)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 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법문에서 명확히 구분하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 도모를 위해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며,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자원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함(안 제10조제2항).

라.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제1항제7의2호, 안 제26조제6항).

마.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

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역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안 제18조제4항, 안 제19조제4항, 안 제20조제3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4조의2 제2항).

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안 제58조의2, 안 제60조의2)

사.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아.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2조의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누구든지 군인 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종료된”을 “끝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의2 중 “3년을”을 “6년을”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를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로 한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장 계급의 장교 중 3명 이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1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2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전역된다. 다만,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를 “전역되고,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본문 중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

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를 “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부사관이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을 “부사관의”로 한다.

제4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취업을”을 “취업 및 창업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가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중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0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 전단 중 “장교”를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와 군법무관 1명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호와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2조의2제2항 중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범위·방법, 제2항에 따른 장려금 반납 및 환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 및 그 밖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58조의2, 제60조의2 및 제62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6항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보직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의2제1항제3호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의2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단기복무 부서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임기제부서관으로 임용된 사람 (임기제부서관의 경우 단기복무부서관으로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제7조(장려금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상품의 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u> <u>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u><신 설></u>	<u>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누구든지 군인</u>

	<u>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u> <u>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u>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생략)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u>형</u> 을 선고받고	4. ----- <u>실형</u> -----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 8. (생략)

③ (생략)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 7. (생략)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8. (생략)

② (생략)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생략)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터-----

5. -----

----- 끝난-----

6.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
----- 6년을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제17조의2(보직해임)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 .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보직해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장 계급의 장교 중 3명 이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

③ (생략)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단서 신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③ (생략)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징급하거나 다른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⑦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

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
역된다. <단서 신설>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 ② (생 략)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
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 ②
(생 략)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
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
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
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

----- . 다만, 제17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
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
니한다.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제17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
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
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u>전역된다. 다만,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u>	----- -----<u>전역되고,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u>
④ ・ ⑤ (생략)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u>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u>
③ (생략)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 ⑤ (생략)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이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教育)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부사관의-----

-----.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① -----

-----취업 및 창업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 설>

<신 설>

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
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
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
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
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장교·준사관 또는 부
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 예정
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 ②
(생략)
<신설>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중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 . -----

③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와 군

③ (생 략)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 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3. <u>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단서 신설></u>	<u>법무관 1명으로 항고심사위원회</u> <u>회를 구성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1호와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u> 4. <u>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② -----<u>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u>
---	---

<신 설>

<신 설>

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범위·방법, 제2항에 따른 장려금 반납 및 환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 및 그 밖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